

의안번호	제 314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월 일 (제 308 회)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연월일	2012년 4월 18일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14
----------	-----

제안연월일 : 2012년 4월 18일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3월 12일 최미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제출되어 201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12년 3월 19일 김양희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제출되어 2012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위의 2건을 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2. 4. 18)상정, 심사한 결과 2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2. 대안의 제안이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북도의 한부모가족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나. 3년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공표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7조)

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8조~제10조)

마. 한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말한다.
2.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청소년한부모가족"이란 24세 이하인 모 또는 부로서 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5.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 군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도내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3. 취업,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주거상태, 여가활용,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만족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사업
 3. 주거 환경개선, 생활자립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사업
 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자립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부지사
2.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
3.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부서의 장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 가족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